

## 『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』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

- 2008년 12월 18일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 
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
- 2008년 12월 19일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 
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규정에 의거 친환경  
상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 
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 
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·운영,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 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다. 주요내용

### ○ 제1장 총칙

- 총괄사항 (제1조 내지 제4조)
  - 목적, 용어의 정의, 다른 법률과의 관계, 적용대상범위

### ○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
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·운영
- 협의회 기능
- 회의, 간사, 수당 및 여비

### ○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

-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촉진 시책의 수립
-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
-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
- 친환경상품 구매의무
- 친환경상품 구매예외
- 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
- 교육훈련

### ○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·소비촉진

-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
-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판매지원
-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
- 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

### ○ 보칙

- 기관평가
- 포상
- 사무분장
- 시행 규칙

## 라. 참고사항
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### 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 및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, 회의,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
-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촉진시책의 수립, 구매의무, 구매예외, 판단기준의 설정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)
-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판매지원, 정보제공, 구매 증진사업 평가 및 포상,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7조부터 제24조)

### ○ 검토 결과
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친환경  
상품의 생산·소비·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 
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 
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 론    요 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 사    결    과 : 수정가결